

	법규적용 여부 결정서			표 준 번 호	법규-01	제 정 일 자	2013.08.28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일자(번호)	2017.1.26(1)	쪽 번 호	1 / 5
구 분	적 용 법 규 파 악 결 과			당사 적용 계획 / 현황			
	항 목	조 항	규 제 내 용	당 사 현 황		관 련 문 서 / 기 록	
총칙	대기오염물질	법 2 조 규칙 별표 1	입자상 물질 등 총 64 중 중 해당항목	먼지, THC, 황산화물(질산화물, 이산화질소, 이산화황), 염화수소		대기배출시설설치 허가증 대기오염관리 지침서	
	특정대기유해물질	법 2 조 규칙 별표 2	카드뮴 및 그 화합물 등 총 35 중 중 해당항목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법 2 조 규칙 별표 3	금속의 표면처리 시설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제조시설 등 공통시설 등	건식도장, 습식도장, 세척기		대기배출시설설치 허가증 대기오염관리 지침서	
	대기오염방지시설	법 2 조 규칙 별표 4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제거·감소하는 시설	흡수에 의한 시설, 흡착에 의한 시설		대기배출시설설치 허가증 대기오염관리 지침서	
사업장 등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규제	배출허용기준	법 16 조 규칙별표 8	대기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환경부령으로 정함	신고시설 : 배출허용기준 준수 신고시설 : 사내관리 기준 준수		대기오염관리 지침서 대기측정기록부	
	대기오염물질 배출원 및 배출량 조사	법 17 조	배출원별 배출량 조사표 작성/제출 (1 회/년)	보령시청 제출(1 회/년)		배출량 조사 PRO.	
	대기환경 규제지역의 지정	법 18 조	환경부장관은 환경기준을 초과하였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기질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대기 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	규제지역:서울, 인천, 경기(안양 등) 대상오염물질:오존, 이산화질소, 총먼지(TSP), 미세먼지(PM-10)		환경부고시(제 98-96 호) 환경부고시(제 2000-83 호)	
	총량 규제	법 22 조	환경부장관은 대기오염 상태가 환경기준 을 초과하여 주민의 건강·재산이나 동식 물의 생육에 심 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구역 또는 특별대책지역 중 사업장이 밀집되어 있는 구역의 경우 에는 그 구역의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오 염물질을 총량으로 규제할 수 있다.	■ 해당 없음			
	배출 시설 설치 허가 / 신고	설치허가 대상규모	법 23 조 영 제 11 조①	1.특정대기유해물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 는 기준 이상으로 발생하는 배출시설 2.특별대책지역 안에 설치하는 배출시설 다만, 특정대기유해물질이 제 1 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지 아니하는 배출시 설로서 5 중사업장은 제외한다.	☐ 해당되지 않음 ☒ 관할관서에 허가 실시		대기배출시설설치 허가증
		설치신고 대상규모	법 23 조	상기 허가대상 외의 시설	☐ 해당되지 않음 ☒ 관할관서에 신고 실시		대기배출시설설치신고증명서
		변경허가 대상규모	법 23 조 영 제 11 조④	1.배출시설 규모의 합계나 누계의 50/100 이상 증설 (특정대기유해물질 : 30/100) 2.설치허가를 받은 배출시설의 용도추가	발생시 및 1 회/연 이상 준수평가 후 해당 시 변경허가 실시		대기배출시설설치 허가증

	법규적용 여부 결정서			표 준 번 호	법규-01	제 정 일 자	2013.08.28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일자(번호)	2017.1.26(1)	쪽 번 호	2 / 5
구 분	적 용 법 규 파 악 결 과			당사 적용 계획 / 현황			
	항 목	조 항	규 제 내 용	당 사 현 황		관 련 문 서 / 기 록	

사업장 등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규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 ☞ 변경신고 대상규모		법 23 조 규칙 제 27 조①	1. 배출시설을 증설 또는 교체하거나 폐쇄하는 경우 2. 허가받은 오염물질 외의 새로운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 3. 방지시설을 증설·교체하거나 폐쇄하는 경우 4. 사업장의 명칭이나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5. 사용하는 원료나 연료를 변경하는 경우. 다만, 새로운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아니하고 배출량이 증가되지 아니하는 원료로 변경하는 경우 또는 종전의 연료보다 황황유량이 낮은 연료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6.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임대하는 경우 7. 그 밖의 경우로서 배출시설 설치허가증에 적힌 허가사항 및 일일조업시간을 변경하는 경우	발생시 및 1 회/연 이상 준수평가 후 해당 시 변경신고 실시	대기배출시설 변경신고증명서												
	사업장의 분류기준		법 25 조 영 제 13 조 영 별표 1 의 3	<table><tr><th>종 별</th><th>오염물질 발생량 구분</th></tr><tr><td>1 종 사업장</td><td>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80 톤 이상인 사업장</td></tr><tr><td>2 종 사업장</td><td>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0 톤 이상 80 톤 미만인 사업장</td></tr><tr><td>3 종 사업장</td><td>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10 톤 이상 20 톤 미만인 사업장</td></tr><tr><td>4 종 사업장</td><td>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 톤 이상 10 톤 미만인 사업장</td></tr><tr><td>5 종 사업장</td><td>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 연간 2 톤 미만인 사업장</td></tr></table>	종 별	오염물질 발생량 구분	1 종 사업장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80 톤 이상인 사업장	2 종 사업장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0 톤 이상 80 톤 미만인 사업장	3 종 사업장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10 톤 이상 20 톤 미만인 사업장	4 종 사업장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 톤 이상 10 톤 미만인 사업장	5 종 사업장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 연간 2 톤 미만인 사업장	2 종 사업장	대기배출시설설치허가
	종 별	오염물질 발생량 구분																
	1 종 사업장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80 톤 이상인 사업장																
2 종 사업장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0 톤 이상 80 톤 미만인 사업장																	
3 종 사업장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10 톤 이상 20 톤 미만인 사업장																	
4 종 사업장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 톤 이상 10 톤 미만인 사업장																	
5 종 사업장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 연간 2 톤 미만인 사업장																	
방 지 시 설 의 설 치 등	방지시설 설치	법 26 조	배출시설이 배출허용기준이하로 배출되게 하기 위하여 방지시설 설치하여야 함.		방지시설 설치	공사 사양서 공사 완료 보고서												
	방지시설 설치 면제 기준	영제 14 조	1.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는 경우 2.그 밖에 방지시설의 설치 외의 방법으로 오염물질의 적정처리가 가능한 경우		1.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는 경우에 해당됨	특기사항 없음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	법 26 조② 규칙 29 조	1.배출시설의 공정을 변경하거나 사용하는 원료 또는 연료 등을 변경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 2.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배출허용기준 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 1)배출허용기준의 강화 2)부대설비의 교체.개선 3)배출시설에서 새로운 대기오염물질의 배출		발생시 및 1 회/연 이상 준수평가 후 해당 시 방지시설 설치													
	방지시설 설계·시공	법 28 조	방지시설의 설치/변경 시 방지시설업의 등록한 자가 설계·시공하여야 함.		방지시설 용역계약 시 공사업체 적법성 확인		설치/공사 계약서											

	법규적용 여부 결정서			표 준 번 호	법규-01	제 정 일 자	2013.08.28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일자(번호)	2017.1.26(1)	쪽 번 호	3 / 5
구 분	적 용 법 규 파 악 결 과			당사 적용 계획 / 현황			
	항 목	조 항	규 제 내 용	당 사 현 황		관 련 문 서 / 기 록	
	공동 방지시설의 설치 등	법 29 조 규칙 33 조	①산업단지나 그 밖에 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의 사업자는 배출시설로부터 나오는 오염물질의 공동처리를 위하여 공동 방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사업자는 공동 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할 때에는 그 시설의 운영기구를 설치하고 대표자를 두어야 한다.				

사업장 등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규제	가 동 개 시	배출시설 등의 가동개시 신고	법 30 조 규칙 34 조,35 조	배출시설,방지시설 설치/변경완료 후, 당해 시설 가동 시 가동개시 신고	관공서 가동개시 신고	가동개시 신고서 대기배출시설 신고/허가증		
		변경신고에 따른 가동개시신고의 대상 규모	영 15 조	설치허가/신고를 한 배출구별 배출시설의 규모의 합계보다 20/100 이상 증설한 경우				
	배 출 시 설 / 방 지 시 설	운영상 금지사항	법 31 조①	1.배출시설 가동 시에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거나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 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하는 행위 2.방지시설을 거치지 아니하고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 는 공기조절장치·가시 배출관 등을 설치하는 행위. 3.부식·마모로 인하여 오염물질이 누출되는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지하는 행위 4.방지시설에 부대 되는 기계·기구 류의 고장 또는 훼손 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지하는 행위 5.기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적 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배출허가기준을 초과한 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행위	현장 일상점검 실시를 통한 준수여부 확인	현장 일상점검표		
		운영기록 보존	법 31 조② 규칙 36 조① 고시제 2016-20 호	대기 1,2,3 중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관한 운영사항』을 『대기배출원관리시스 템』에 전산입력 : 2016.10.24 - 입력시기 : 발생일 + 다음달 - 입력방법 : 전산입력 / 고시 제 6 조 참조			□해당 없음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 과 자가측정에 대한 전산기록 보 조에 관한 고시』 고시제 2016-20 호에 따라 『대기배출원관리시스 템 (SEMS)』에 전산입력	□해당 없음 □SEMS 입력자료
			법 31 조② 규칙 36 조②	대기 4,5 중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관한 운영사항』을 대기 배출시설 및 방지시 설의 운영기록부에 기술 - 작성시기 : 매일 - 기록의 종류 : 수기작성 또는 테이프/디스켓등 전산에 의한 방법			□해당 없음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기록부 매일 기술	□해당 없음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 영 기록부(1년간 보존)
	측정기기의 부착대상 사업장 및 종류 등	법 32 조 영 17 조 영 별표 2,3	배출시설 운영사업자는 다음의 측정기기를 부착. 1.적산전력계 2.굴뚝자동측정기(유량·유속계, 온도측정기 및 자료수집기를 포함) 영[별표 2]: 적산전력계 부착대상시설 및 부착방법 영[별표 3]: 굴뚝자동측정기기의 부착대상 배출시설, 측정항목, 부착면제, 부착시기 및 부착유예	1.적산전력계 부착 완료 2.굴뚝자동측정기: 해당 없음				

		법규적용 여부 결정서			표 준 번 호	법규-01	제 정 일 자	2013.08.28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일자(번호)	2017.1.26(1)	쪽 번 호	4 / 5
구 분		적 용 법 규 파 악 결 과			당사 적용 계획 / 현황			
		항 목	조 항	규 제 내 용	당 사 현 황		관 련 문 서 / 기 록	
		측정기기의 운영.관리기준	법 32 조 규칙 37 조	③측정기기 운영 시 금지사항 1.배출시설을 가동할 때에 측정기기를 고의로 작동하지 아니하거나 정상적인 측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 2.부식, 마모, 고장 또는 훼손되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아니하는 측정기기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하는 행위 3.측정기기를 조작하여 측정결과를 빼뜨리거나 거짓으로 측정결과를 작성하는 행위 ④시행규칙제 37 조 측정기기의 운영관리기준준수				
		배출부과금	법 35 조 영 23~37 조	- 기본부과금 부과대상 오염물질의 종류 1. 황산화물 2. 먼지 - 초과부과금 부과대상 오염물질의 종류 1.황산화물 2.암모니아 3.황화수소 4.이황화탄소 5.먼지 6.불소화합물 7.염화수소 8.염소 9.시아나화수소		기본배출 부과금 부과		기본 배출부과금 신청서
사업장 등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규제		자가측정	법 39 조 규칙 52 조 규칙[별표 11]	배출시설 운영 시 오염물질을 자가측정 또는 위탁측정결과 기록 및 보존 1. 관제센터로 측정결과를 자동 전송하지 않는 사업장의 배출구		월 2 회 이상 측정		위탁측정 실시 (청롱환경, 하이텍) 대기측정기록부, 위탁 계약서, 위탁측정 일정표
				구분	배출구별 규모	측 정 횟 수	측 정 항 목	
				제 1 종 배출구	먼지·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80 톤 이상인 배출구	매주 1 회 이상	별표 8 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는 대기오염물질. 다만, 비산먼지는 제외한다.	
				제 2 종 배출구	먼지·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20 톤 이상 80 톤 미만인 배출구	매월 2 회 이상		
				제 3 종 배출구	먼지·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10 톤 이상 20 톤 미만인 배출구	2 개월 마다 1 회 이상		
		제 4 종 배출구	먼지·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2 톤 이상 10 톤 미만인 배출구	반기 마다 1 회 이상				
제 5 종 배출구	먼지·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2 톤 미만인 배출구	반기 마다 1 회 이상						
환 경	환경기술인 임명 및	법 40 조 영 39 조	- 법 40 조 : 환경기술인 임명		환경기술인 임명		환경기술인 임명서 대기오염관리 지침서	

			법규적용 여부 결정서		표 준 번 호	법규-01	제 정 일 자	2013.08.28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일자(번호)	2017.1.26(1)	쪽 번 호	5 / 5													
구 분	적 용 법 규 파 악 결 과				당사 적용 계획 / 현황																
	항 목		조 항	규 제 내 용	당 사 현 황		관 련 문 서 / 기 록														
	기 술 인	자격기준		- 영 별표 10 : 사업장 별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 <table border="1"><tr><td>구 분</td><td>환경기술인 자격기준</td></tr><tr><td>1 종사업장(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80 톤 이상인 사업장)</td><td>대기환경기사 이상의 기술자격 소지자 1 인 이상</td></tr><tr><td>2 종사업장(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0 톤 이상 80 톤 미만인 사업장)</td><td>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 소지자 1 인 이상</td></tr><tr><td>3 종사업장(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10 톤 이상 20 톤 미만인 사업장)</td><td>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소지자, 환경기능사 또는 3 년 이상 대기분야 환경관련업무에 종사한자 1 인 이상</td></tr><tr><td>4 종사업장(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 톤 이상 10 톤 미만인 사업장)</td><td>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배출시설 설치 신고가 수리된 자 또는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수리된 자가 해당 사업장의 배출 시설 및 방지시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용 인 중에서 임명하는 자 1 명 이상</td></tr><tr><td>5 종사업장(1 종 부터 4 종사업장까지 속하지 아니하는 사업장)</td><td></td></tr></table>			구 분	환경기술인 자격기준	1 종사업장(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80 톤 이상인 사업장)	대기환경기사 이상의 기술자격 소지자 1 인 이상	2 종사업장(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0 톤 이상 80 톤 미만인 사업장)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 소지자 1 인 이상	3 종사업장(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10 톤 이상 20 톤 미만인 사업장)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소지자, 환경기능사 또는 3 년 이상 대기분야 환경관련업무에 종사한자 1 인 이상	4 종사업장(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 톤 이상 10 톤 미만인 사업장)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배출시설 설치 신고가 수리된 자 또는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수리된 자가 해당 사업장의 배출 시설 및 방지시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용 인 중에서 임명하는 자 1 명 이상	5 종사업장(1 종 부터 4 종사업장까지 속하지 아니하는 사업장)				
	구 분	환경기술인 자격기준																			
1 종사업장(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80 톤 이상인 사업장)	대기환경기사 이상의 기술자격 소지자 1 인 이상																				
2 종사업장(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0 톤 이상 80 톤 미만인 사업장)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 소지자 1 인 이상																				
3 종사업장(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10 톤 이상 20 톤 미만인 사업장)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소지자, 환경기능사 또는 3 년 이상 대기분야 환경관련업무에 종사한자 1 인 이상																				
4 종사업장(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 톤 이상 10 톤 미만인 사업장)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배출시설 설치 신고가 수리된 자 또는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수리된 자가 해당 사업장의 배출 시설 및 방지시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용 인 중에서 임명하는 자 1 명 이상																				
5 종사업장(1 종 부터 4 종사업장까지 속하지 아니하는 사업장)																					
	환경기술인 준수사항	규칙 54 조	[규칙 제54조] 환경기술인의 준수사항 및 관리사항 <table border="1"><tr><td>환경기술인 주간점검 실시</td></tr></table> ① 법 제 40 조제 2 항에 따른 환경기술인의 준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정상 가동하여 배출허용기준에 맞도록 할 것 2.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업무일지를 사실에 기초하여 작성할 것 3. 자가측정은 정확히 할 것 4. 자가측정 한 결과를 사실대로 기록할 것 5. 자가측정 시에 사용한 여과지는 시료채취기록지와 함께 날짜별로 보관.관리할 것 6. 환경기술인은 사업장에 상근할 것. ② 법 제 40 조제 3 항에 따른 환경기술인의 관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관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2.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기록부의 기록.보존에 관한 사항 3. 자가측정 및 자가측정한 결과의 기록.보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시.도지사가 지시하는 사항			환경기술인 주간점검 실시	환경주간점검표														
환경기술인 주간점검 실시																					
보칙	환경기술인 교육	법 77 조 규칙 113 조,	환경기술인 법정 교육 이수			3 년마다 1 회 이상		교육 수료증													